

2022. 04. 25(월). 10:00  
제2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김지훈 의원 등 6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2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송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재정지원 대상 사업을 규정함 (안 제3조)
- 나. 재정지원 기준과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보조금 점검과 회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라. 효율적인 사무 운영을 위해 업무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8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 결과(2022. 4. 14. ~ 4. 20.) : “의견있음”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수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때 남양주시장과 협의하여 버스노선의 일부 변경에 대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li> <li>- 이때 시장은 변경된 노선에 대한 이용승객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금액을 증·차감할 수 있다.</li> </ul>	

○ 전문위원 의견 : “미반영”

- 운수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버스노선 변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에서 시장과 운수사업자의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업계획 등의 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으로 제정조례에 반영되어 있어 조항 신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시장은 변경된 노선에 대한 이용승객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이용승객 등을 포함한 적자손실액 산정용역, 서비스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정지원금을 산정하는 사항 등이 제정조례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 조항 신설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에 대한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서비스평가 등을 통해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재정지원의 신청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에는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상위법령의 근거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통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 직접 지원이나 사무 위탁 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2년 4월 22일

산업건설전문위원 이 명 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생략]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 9. [생략]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④ ~ ⑨ [생략]

## ☑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남·녀 구분 화장실 및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한 사업